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019. 2. 15.(금)

협약 체결 사전보고

환 경 국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협약 체결 사전보고

- 2019. 2. 15.(금) 10:30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3. IoT기반 다중이용시설 효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학 자율협약(MOU)	1
4. 2019. 경기 환경전(Eco Fair Korea) 위·수탁 협약	5
5. 환경산업 지원사업('19~'20) 위·수탁 협약	11
6. 숲속 공장(Plant in the Forest) 조성 협약	17
7. LP가스안전지킴이 업무협약	19

- IoT기반 다중이용시설 효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 관·학 자율협약(MOU) 체결 계획

담당 과장	미세먼지대책과 한현희 (☎031-8008-3510)	팀장	미세먼지기획팀장 김상철 (☎031-8008-3561)	담당자	김선화
----------	---------------------------------	----	----------------------------------	-----	-----

◆ 「IoT 기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관·학 상호자율협약 체결 계획임

□ 개 요

- 사 업 명 : IoT 기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시범사업(도비/직접, 민선7기공약)
- 협 약 목 적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표준관리 모델」 구축
- 협약당사자 : 경기도(환경국), 평택대학교(산학협력단)
- 협 약 기 간 : 협약 체결일 ~ 3년

□ 협약서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기관별 업무	(평택대학교) - 과학기술 바탕으로 상시측정된 실내공기질 빅데이터의 환경적 분석 및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표준 관리모델 제시 (경 기 도) - IoT기반 상시측정 실내공기질 빅데이터 환경적 분석 및 실내공기질 표준 관리모델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기 타	- 상호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은 별도로 정함	

□ 향후계획

- '19. 2월 : 협약(MOU)체결을 위한 의회 도시환경위 사전보고
- '19. 2월 말 : 상호 업무협약 체결 (환경국장실)
- '19. 3월 ~ : 본 사업 과학기술적 자문 및 검토

- IoT기반 다중이용시설 효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
경기도와 평택대학교 간 자율협약서(안)

경기도와 평택대학교(이하 “두 기관”이라 한다.) 간
관·학 협력을 통해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데이터 분석과 효율적 관리모델을 제시
하고자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제1조 본 협약은 경기도 내 ‘IoT 기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두 기관의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두 기관의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평택대학교는 상시측정된 실내공기질 빅데이터의
환경적 분석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표준 관리모델을 제시한다.
2. 경기도는 IoT 기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표준관리
모델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3. 두 기관이 동 사업을 위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두 기관의 상호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두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상호 협력한다. 다만,
본 협약의 모든 내용은 두 기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제5조 본 협약은 체결일로 부터 3년간 유효하되 만료일 전
두 기관이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두 기관은 협력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경기도지사

평택대학교 총장

代 환경국장

代 산학협력단장

2019. 경기 환경전(Eco Fair Korea) 위·수탁 협약 추진

담당 과장	환경정책과 엄진섭 (☎031-8008-3530)	팀장	환경산업협력팀장 김경섭 (☎031-8008-3534)	담당자	이윤표
----------	-------------------------------	----	----------------------------------	-----	-----

□ 추진방향

- 협약기관 : 킨텍스(수탁자)
- 협약기간 : 2019. 2월 ~ 2019. 12. 31. (11개월)
- 위탁사무 : 경기환경전(Eco Fair Korea) 행사 추진

□ 사업내용

- 기간/장소 : 2019. 10. 1. ~ 10. 2.(예정) / KINTEX 제 1전시장 4홀(10,773㎡)
- 주최/주관 : 경기도 / 킨텍스(수탁자)
- 소요예산 : 600백만원(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행사구성

구 분	내 용
공식행사	■ 개막식 및 주요인사 전시관 관람
전시회+홍보관	■ 환경산업 전시회(200개 기업, 450 부스) - 대기, 물, 자원순환, 환경지식 정보감시 등 기술·제품 전시, 홍보 - 환경부, 도·시군 정책홍보,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제품 전시, 홍보
환경산업 일자리창출	■ 환경분야 일자리 채용 상담회(기업200개사, 구직자500명) 등
국제 행사	■ 국제환경산업협력포럼, 국내·외 바이어 초청 1:1 무역상담회 (국내 200, 해외 70) 등 * 참여국가 : 중국, 베트남 등
부대행사	■ 사회적환경기업 및 환경단체 전시·홍보, 물산업 신기술컨퍼런스, 환경기술 지원사업 성과발표 세미나, 환경기술인 교육 등

□ 추진일정

일 정	내 용
2019. 2월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2019. 3월	사업비 교부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2019. 3월 ~ 10월	경기환경전 사업 추진
2019. 11월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2019 경기환경전(Eco Fair Korea)」

위·수탁 협약서 (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와 (주)킨텍스(이하 ‘수탁자’)는 「2019 경기환경전(Eco Fair Korea)」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 무 명	사무의 내용
2019 경기환경전 (Eco Fair Korea)	1. 「2019 경기환경전(Eco Fair Korea)」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2. 환경산업 전시회 개최, 참가기업 모집(200개 업체 내외), 사후관리 3. 바이어 초청 무역 상담회 개최, 국내외 바이어 유치(국내 200. 해외 70), 일자리채용 상담회 등 사후관리 4. 관련 컨벤션 기획 및 개최 5. 경기환경전 참여 환경부, 도, 시군, 환경산업 유관기관 등 총괄 지원 6. 개막식 및 부대 행사운영 7. 전시장 조성 및 운영 8. 행사 홍보 기획·운영 및 홍보물 제작·배포 9. 그 밖에 「2019 경기환경전(Eco Fair Korea)」 추진에 필요한 업무 등 10. 제4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붙임1 「2019. 경기환경전 기본 계획」에 따른다.

제2조(위·수탁기간)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하며, 협약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수탁자”의 협약에 따른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지사”는 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3.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해지된 날까지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도지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①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와 “수탁자”의 합의에 따른다.

제5조(해석) ①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도지사”와 “수탁자”의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과 관례를 준용하되 이에 의해서도 정해지지 않는 경우 “도지사”가 정하기로 한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① 이 협약에 따른 사업비는 600백만원(도비)로 한다.

② 이 협약 체결 이후에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도지사”와 “수탁자”가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4조의 업무 수행 계획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필요 경비(사업비 교부 신청)를 “도지사”에게 청구한다.

제8조(사업비의 교부) ① “도지사”는 제7조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하여 “수탁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경비의 소요시기 등을 감안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기도 사업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관리해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관리 등) ① “수탁자”는 사업비를 이 협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최종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019 경기환경전(Eco Fair Korea)」 운영 중 발생한 모든 수익금은 제1조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도지사”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집행한다.

④ “수탁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관리 및 사전승인) ① “수탁자”는 이 협약서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안되며, 본 사업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사업 시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책임 및 손해배상) ① “도지사”와 “수탁자”는 협약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 가입증서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관리 등) ① “수탁자”는 “도지사”에게 제출한 수탁업무 추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 협약기간 중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3조(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사업성과물과 데이터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정보는 경기도에 소유권이 있으며, 관련 자료 일체를 “도지사”가 원하는 시점에 제공해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서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을 완료한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도지사”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2월 일

위탁자 : 경 기 도 지 사

이 재 명 (직인)

수탁자 : (주) 킨 텍 스 사장

임 창 열 (직인)

환경산업 지원사업('19~'20년) 위·수탁 협약 추진

담당 과장	환경정책과 엄진섭 (☎031-8008-3530)	팀장	환경산업협력팀장 김경섭 (☎031-8008-3534)	담당자	권다영
----------	-------------------------------	----	----------------------------------	-----	-----

□ 추진방향

- 협약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탁자)
- 협약기간 : 2019. 1월 ~ 2020. 12. 31. (2년)
- 사 업 비 : 280백만원(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19년 본예산)
- 위탁사무 :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 환경기업 역량강화, 환경기업 통상촉진단 파견

□ 사업내용

○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

- 사 업 비 : 166백만원 (2019년 본예산)
- 사업내용
 - '19년도 유망환경기업(36개사) 지원 : 맞춤형 지원금(29개사) 등 인센티브 19종 제공
 - '20년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 신규 및 재지정 15개사 내외 선정하여 지정서·현판 교부

○ 환경기업 역량강화

- 사 업 비 : 34백만원 (2019년 본예산)
- 사업내용 : 환경기업 전문가 컨설팅 및 현장애로 지원(마케팅, 특허출원, 시제품제작 등) 추진

○ 환경기업 통상촉진단 파견

- 사 업 비 : 80백만원 (2019년 본예산)
- 사업내용 : 경기도 환경기업-현지 바이어 간 1:1 무역상담회 개최

□ 추진일정

일 정	내 용
2019. 2월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2019. 3월	사업비 교부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유망환경기업 지원 및 환경기업 역량강화 사업추진(연중)
2019. 5월, 9월	환경기업 통상촉진단 파견 (연2회)
2019. 6월 ~ 11월	'20년도 유망환경기업 공고 및 선정/ 지정서 수여식
2019. 12월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19~'20년 경기도 환경산업 지원사업 -

위·수탁 협약서(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의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수탁기관”으로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수탁사무

사 무 명	사무의 내용
환경산업 지원사업	1.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 - 유망환경기업 지정 - 유망환경기업 지원 2. 환경기업 역량강화 - 환경산업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을 위한 환경산업 포털운영 - 중소 환경기업 전문가 컨설팅 및 현장애로 지원 - 환경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 환경기업 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3. 국내외 마케팅 지원> - 환경기업 통상촉진단 파견 및 무역상담회 개최

2. 위·수탁시설 및 장비 : 해당없음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위·수탁 협약 체결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위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위·수탁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수탁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지사”는 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3.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4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와 “수탁기관”의 협의를 의한다.

제5조(해석) ①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도지사”와 “수탁기관”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과 관례를 준용하되 이에 의해서도 정해지지 않는 경우 도지사가 정하기로 한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따라 “수탁기관”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도지사”가 “수탁기관”에게 지원하는 2019년도 사업비는 금 280,000,000원(금이억팔천만원)으로 하고, 2020년도 사업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사업비의 교부) ① “도지사”는 사업비를 사업추진시기에 맞게 “수탁기관”의 교부신청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도지사”는 경비의 소요시기 등을 감안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관리해야 한다.

제9조(사업비 관리 등) ①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사업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기관”은 위·수탁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최종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교부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사업비 정산 시에 집행잔액 및 사업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한 이자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관리 및 사전승인) ① “수탁기관”은 이 협약서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안되며, 본 사업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사업 시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책임 및 손해배상) “도지사”와 “수탁자”는 협약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개인정보 관리 등) ① “수탁기관”은 “도지사”에게 제출한 수탁업무 추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 협약기간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3조(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사업성과물과 데이터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정보는 경기도에 소유권이 있으며, 관련 자료 일체를 “도지사”가 원하는 시점에 제공해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서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탁금 정산을 완료한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2월 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이 재 명 (인)

김 기 준 (인)

숲속 공장(Plant in the Forest) 조성 협약 추진

담당 과장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031-8008-8200)	팀장	환경점검2팀장 임헌벽 (☎031-8008-8221)	담당자	최진우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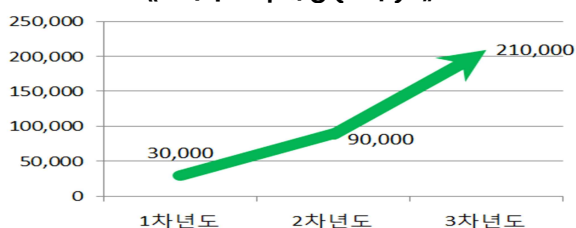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30%인 17,785개소가 도내에 있으며, 배출되는 미세먼지(PM₁₀)는 연간 1,243톤.
 - 나무로만 정화할 경우 약 35백만 그루 필요 (1그루당 35.7g 정화)
- 공장 유휴부지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숲을 만들어 주변 대기질 개선 및 쉼터 공간 확대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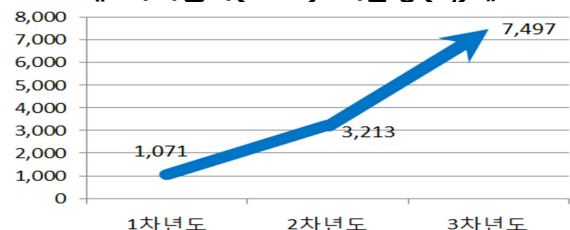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113개소
- 추진기간 : '19. 1월 ~ '21.12월 (3개년)
- 주요내용 : 미세먼지 정화에 효과적인 수종 자율 식재 운동 (비예산)
- 그간 추진사항
 - 사전 설문조사 : '18.12. 3(월)
 - 대형 사업장 : 주변경관, 민원해소용 등 대부분 긍정적 반응
 - 소형 사업장 : 임차건물, 부지협소 등 어려운 여건 유보 의견
 - 사업 설명회 : '19. 1.7(월) ~ 1.15(화)
 - 숲속 공장 조성 협약(MOU) 신청 : 113개소 / 30,883그루 식재
- 기대 효과

《 나무 식재량(그루) 》



《 미세먼지(PM₁₀) 저감량(kg) 》



□ 향후 추진계획

- 道, 사업자간 협약(MOU) 체결 : '19. 3월중
- 나무 식재 : '19. 3월 ~ 2019.10월 (8개월간, 수종별 시기에 맞춰 식재)

미세먼지 정화 숲속 공장 조성사업 협약서(안)

협약참여 사업자와 경기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정화 기능이 뛰어난 나무의 식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사업장 주변 나무 숲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력하여 미세먼지 정화 숲속 공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2. **협약 참여 사업자**는 사업장 여건에 적합하게 미세먼지 정화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노력한다.
3. **경기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우수사업장에 대해 다음해 정기점검 면제, 도지사 표창 수여 및 언론보도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4.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약당사자 사이에 **상호 합의하여** 추진한다.
5. 이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21년말까지로 하며, 유효기간의 연장은 협약 당사자 사이의 상호 합의에 따른다.

이 협약서는 협약자 사이에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3월 일

경기도지사

○○(주) 대표이사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LP가스안전지킴이 업무협약 체결 계획보고

담당 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 윤중환 (☎031-8008-6010)	팀장	에너지자원관리팀장 김계수 (☎031-8008-6025)	담당자	주인하
----------	----------------------------------	----	-----------------------------------	-----	-----

□ 추진배경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 제안(道→행안부/‘18.10.)
※ 사업채택(‘18.12.11, 행안부) / 국비 686백만원 지원(국비 요구액의 36%)
- 청년의 적절한 교육 및 LP가스시설의 효과적인 점검 추진을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필요
*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 전문교육, 점검 등을 위해 설립된 산업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설립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 협약체결 개요

- 협 약 명 :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LP가스안전지킴이)사업 업무협약
- 일시/장소 : ‘19. 3. 12(화) 13:00 ~ 13:30 / 도청 상황실
- 협약기관 : 경기도, 한국가스안전공사
- 협약내용 : LP가스안전지킴이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 (경 기 도) LP가스안전지킴이 사업 계획수립, 사업비 조성 등
 - (가스안전공사) 청년채용, 교육훈련, 점검 추진 등

□ 향후계획

- 국고보조금 교부(‘19.2월 / 道→市→공사)
※ 성립전 예산 사용하여 국비분 조기추진, 1회 추경시 도·시비 확보추진
- 청년인력 채용·교육(‘19.3월) 및 점검 추진(‘19.4월~8월/5개월간)
- 사업추진 평가(‘19.9월)결과 보완반영하여 2020년 확대 추진(5개시→道전체)
※ 국비 추가 지원 요구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19. 1. ~ ‘19. 9.
- 사업대상 : 174명 채용 ※ LP가스사용시설(주택 등) 5개시* 23만 개소 점검(시범사업)
* 5개시 : 화성, 용인, 남양주, 파주, 김포 [의견조회(‘18.11) 및 시군회의(‘19.1)를 통해 ‘19년 시범사업 대상 선정]
- 사 업 비 : 2,307백만원[국 686(30%)*, 도 810.5(35%), 시군 810.5(35%)] * 성립전 사용 추진
- 사업내용 : 지역청년 채용 및 교육훈련(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 후 점검 추진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LP가스 안전지킴이) 업무협약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상호 협력하여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LP가스 안전지킴이)(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도민의 가스안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양 기관 간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협약의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다.

- ① 도는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비 조성 등을 수행한다.
- ② 공사는 채용(채용공고 및 홍보 등), 교육, 인력관리(임금 지급 등), 점검 추진, 자료(실적)관리 및 제공, 사업비 정산 등을 수행한다.

제4조(협약의 준수 등) 공사는 본 협약을 준수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조(사업의 진행)

- ① 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의 채용방법 및 근로조건 등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② 공사는 채용인력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기간 중에 사고(개인정보 관련 포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일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 및 해당 시·군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공사는 사업종료 후 채용인력의 취업연계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 ④ 공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도 및 해당 시·군에 통보 또는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료는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 1. 사업수행과 관련한 추진현황
 - 2. 사업의 성과 및 결과 보고서

제6조(기타 사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세부내용(채용 선발 우선순위 및 인원, 세부추진계획 등)은 해당 시·군 관할 본부 및 지사별로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사전협의를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의 해약 및 해지)

- ①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 2.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도와 공사가 본 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 3. 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켰을 때
- ② 공사는 이 협약이 해약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도와 협의하여 일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석)

- ① 협약상 용어에 대한 해석은 도와 공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이 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도와 공사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도의 해석에 따른다.
- 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시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효력발생) 이 협약서는 도와 공사가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3. .



경기도지사
이 재 명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 형 근